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8,075,616	11,042,268
일반회계	347,719,996	10,431,600
특별회계	20,355,620	610,669
기타특별회계	20,355,620	610,66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47,931	73,43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7,695	17,931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826,090	204,78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94,675	17,84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57,286	37,719
수질개선 특별회계	6,864,352	205,931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491,406	44,742
기반시설 특별회계	276,185	8,28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26,79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